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11월 19일, 권영진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11월 2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2.18.)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025.12.9.)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국회의원 권영진)

현행법은 건축물에 설치되는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기계설비에 적용되는 유지관리기준을 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관리자는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기계설비의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함)하도록 하며,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본금과 전문인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관리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의 두 제도를 혼용하여 규정하고 있어 수범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며, 그 밖에도 근무처나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등 제도상의 허점이 존재함.

이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다양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현행법에 따르면, 기계설비의 ‘유지관리’는 기계설비의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운전·운용하는 모든 행위를, ‘성능점검’은 기계설비의 유

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은 유지관리는 기계설비의 외관, 운전 및 안전상태를 육안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점검하는 것으로, 성능점검은 기계설비 시스템의 작동 상태 등과 에너지사용량 등을 확인·검토하고 성능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에 해당하나,

현행법은 제16조~제18조에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정·고시, 관리주체의 유지관리기준 준수, 유지관리 업무의 위탁)을 규정하면서,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성능점검에 관한 사항(성능점검 및 점검기록 작성·보존·제출, 성능점검 업무의 대행)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는 성능점검을 유지관리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오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17조를 2개 조로 분리[안 제16조의2(기계설비의 유지관리) / 안 제17조(기계설비의 성능점검)]하여 두 제도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기록의 작성·보존·제출 의무를 강화하여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6조에서는 성능점검에 대해서도 필요한 기준을 제정·고시하도록 명시하고,

안 제16조의2 및 안 제17조에서는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각각 별도의 조로 구분하면서, 유지관리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미규정된 관리 기록 작성·보존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시 제출 의무를 신설하고, 성능점검에 대하여는 현행 점검기록 작성·보존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시 제출 의무를 의무적 제출로 강화하며, 안 제18조에서는 유지관리의 위탁과 및 성능점검의 대행에 관한 사항을 현행과 달리 하나의 조에서 규정하는 방식으로 정비하고 있음.

한편,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등과 관련하여, 현행은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의 대상이 동일함에 비해 개정안은 성능점검 대상을 유지관리 대상 중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은 개념상 차이가 있고 성능점검의 내용이 유지관리보다 강화된 측면이 있으므로,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 등 중에서 면적, 세대 수, 용도 등에 따라 그 필요성을 고려하여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등의 범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 권영진)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권영진의원과 문진석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두 건의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함.

6. 찬반토론 요지

(생략)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내용을 반영함.